

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

「도로법」 제6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5년 12월 24일

하 리 면 장



도로의 종류 및 노선	지방도(927), 군도(1), 리도(205), 기타		
점용의 목적	하수도관 설치	점용기간	2015.12.24.~ 2025.12.31.
점용의 장소	예천군 하리면 우곡리 (읍실) 일원	점용면적	영구 331.5㎡ 임시 5,775.8㎡
점용물의 종류	하수도관	공사기간	2015년~2017년
공사 방법	굴착	굴착 시 교통대책	유
도로의 복구방법	원상복구	도로굴착	유
점용자의 주소·성명	예천군·읍 군청길33 예천군수(환경관리과장)	그 밖의 사항	